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06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합10244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가산세 합계 24,978,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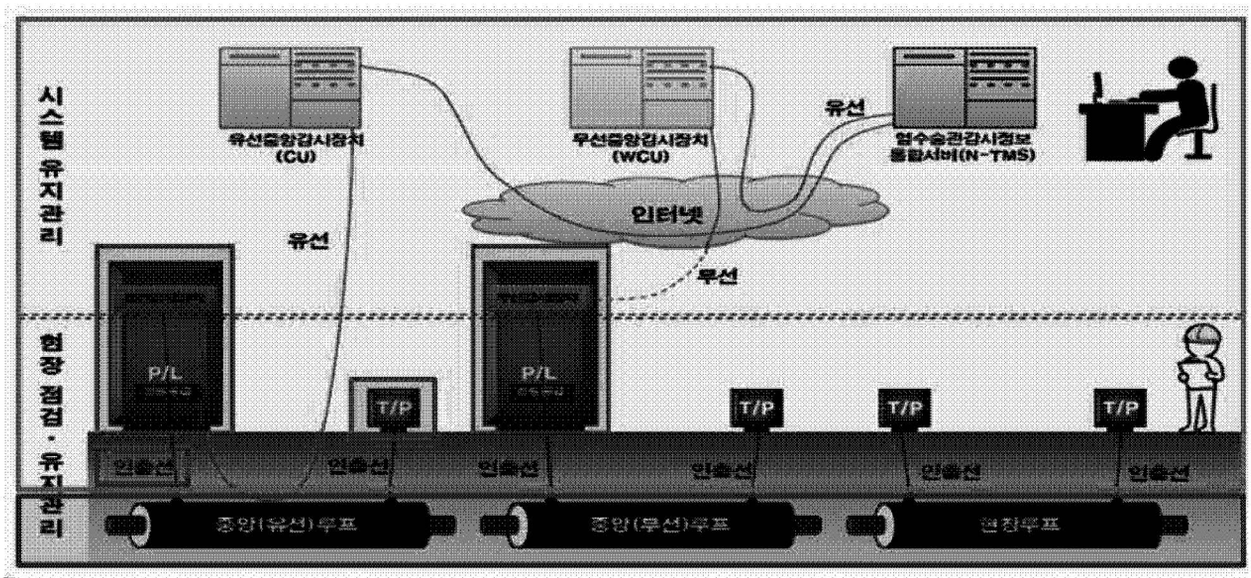
가.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의 개요

1) 열수송관은 열생산시설에서 열사용시설까지 열에너지인 온수를 수송·분배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내관과 외관 및 보온재의 이중보온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열수송관이 손상되어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누수현상의 발견과 누수 위치의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열수송관의 내관과 외관 사이의 보온재 부분에 감지선을 설치하고, 열수송관이 손상되는 경우 감지선이 단선되거나 감지선에서 측정하는 절연저항 값이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열수송관의 누수 현상을 발견하고 그 위치를 탐지하는 방식의 감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2)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을 구성하는 물품으로는 감지선의 신호를 지상에 위치한 감시장치로 전달하는 케이블인 '인출선', 인출선과 연결된 지상의 시설물인 '테스트 포인트(T/P)', 인출선을 통해 송출된 감지선의 신호를 측정하여 열수송관 상태 감시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감시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감시장치인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와 감지선의 신호를 측정하여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RF',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및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RF를 보관하는 지상 시설물인 '판넬', '유·무선중앙감시장치', '열수송관 감시정보통합서버' 등이 존재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3)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을 도해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의 개요]

나. 원고의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원고의 ○○지사는 2015. 6.부터 2019. 4.까지 물, 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각 열수송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취득하면서, 각 열수송관에 대한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이하 '이 사건 감시장치'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열수송관 취득에 관한 지방세 신고·납부내역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열수송관 등을 설치한 이후 이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은 후 나머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감시장치 중 판넬, 테스트 포인트,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RF, 인출선(케이블)(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은 위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열수송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순번	취득 내역	취득일 (신고일)	이 사건 물품 취득가액(원)	이 사건 물품 관련 취득세(원) (가산세 포함)
1	2014년 ○○지사 열배관 공사 (부분 준공2차)	2015. 6. 5. (2015. 7. 30.)	7,233,608	150,420
2	○○시 2생활권 열배관 공사	2015. 11. 5. (2015. 12. 30.)	481,486,468	9,728,090
3	2014년 ○○지사 열배관 공사 (최종준공)	2015. 12. 1. (2016. 2. 1.)	288,293,034	5,793,260
4	2015년 ○○지사 열배관 공사 (최종준공)	2017. 4. 1. (2017. 5. 30.)	229,874,965	6,411,500
5	2015년 ○○지사 열배관 공사 (2~4생활권 열수송관 이설공사)	2017. 4. 1. (2017. 5. 30.)	633,187	17,640
6	2015년 ○○지사 열배관 공사 (1~3생활권 맨홀 환기구 이설)	2017. 4. 1. (2017. 5. 30.)	3,783,602	105,500
7	○○시 공동구 2단계(3차구간) 열배관 공사	2018. 4. 20. (2018. 6. 11.)	9,986,786	254,510
8	2017년 ○○지사 남부권 열수송관 공사	2018. 10. 1. (2018. 11. 26.)	91,935,793	2,248,890
9	○○시 복합편의시설 열수송관 이설공사	2019. 4. 16. (2019. 6. 14.)	11,478,460	268,410
합계			1,124,705,903	24,978,220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라. 피고의 지방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9. 8. 7.부터 2019. 8. 26.까지 원고의 ○○지사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물품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2019. 8. 26.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9,564,41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9. 9. 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7.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9. 10. 18.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4,978,220원(각 과소신고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로 같은 항 제1 내지 7호로 규정된 각 간접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이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3) 또한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및 대법원 위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열수송관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열수송관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열수송관과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열수송관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1) 이 사건 물품 중 판넬, 테스트 포인트,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RF는 동산으로서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열수송관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부동산(건축물)으로서 위 각 물품들과 수 미터의 거리를 두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면서 인출선을 통해 위 각 물품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출선은 이 사건 열수송관과의 접속단자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열수송관과 분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인출선을 이 사건 열수송관에서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인출선의 분리에 인출선의 훼손이 수반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인출선의 분리가 가능한 이상 인출선을 통해 이 사건 열수송관과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이 사건 물품 역시 마찬가지로 열수송관과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2)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열수송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장비로서 열수송관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사실이나 열수송관은 열에너지인 온수를 수송·분배하기 위한 배관이고, 이 사건 물품은 열수송관의 누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장치이므로 양자의 용도와 기능은 구분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과 동종 물품들을 열수송관에서 분리하여 옮긴 사례가 존재하고, 이 사건 열수송관과 이 사건 감시장치의 설치 시점과 설치 업체가 상이한 사례가 존재하며, 심지어 이 사건 열수송관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시장치 중 일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열수송관으로부터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2017. 3. 9. 감시장치를 열수송관에서 분리하여 원고의 지사 간 전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메뉴얼)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고양지사에서 대구지사로 무선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수송관 감시장치 21개 및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RF 8개의 시범 전용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중 판넬과 테스트 포인트를 이설하는 공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다.

나) 원고는 ○○ 소재 A 공동주택에 관하여 열수송관을 2014. 2. 5. 설치하여 2015. 3. 20.부터 열공급을 개시한 반면, 위 열수송관에 관한 테스트 포인트는 주식회사 B에 의하여 열수송관이 설치된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후인 2022. 2. 6.경에 설치되었고, 그 밖에도 열수송관의 설치시점과 열수송관 감시장치의 설치시점이 상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다) 그 밖에 원고가 ○○시 ○-○ 생활권 지역의 택지조성공사에 따라 열수송관 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열수송관에 테스트 포인트를 비롯한 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열수송관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물품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열수송관의 취득가격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끝.